

극동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취지

: 상위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반영 필요

예비대학생의 수강신청을 통한 학칙 반영 및 연계융합학생설계 전공에 대한 학칙 명시

전임교원의 임무에 관한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하며, 강사 및 겸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근거 마련 필요

2. 개정주요내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위과정 및 입학정원에 관한 조문 반영

온라인 수업을 원경 수업으로 정정 하며, 원격수업에 관한 조문을 수정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교원의 임무를 명시 하고 강사 및 겸임교원의 임용 근거를 명시

3. 시행일: 승인일

4. 향후일정

- ①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의견수렴: 사전보고 이후 7일
- ②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2022년 1월 중
- ③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2022년 2월 중
- ④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2년 2월 중
- ⑤ 개정 안 확정 보고 및 공포

붙임 : 1. 극동대학교학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극동대학교학칙 개정(안) 전문 1부. 끝.

극동대학교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극동대학교 학칙 개정(안)**

개정전	개정후	비고
<p>제4조(과정) ① 대학에 학사과정을 둔다. ②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둔다. ③ 교육대학원, 글로벌대학원, 산업기술보안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p>	<p>제4조(학위과정 등) ① 대학에 학사학위 과정을,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p> <p>② 학부 및 대학원에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통합한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학부 및 대학원에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한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④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한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고등교육법 제29조의3 (학위과정의 통합) 반영
<p>제5조(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글로벌대학원, 산업기술보안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p>	<p>제5조(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② <좌동></p>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입학, 편입학 등) 제2항 반영
<p>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이상으로 하며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기간도 수업일수에 포함한다 다만,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일수의 일부 단축 및 주말 등 특정기간을 활용한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의 일부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수업일수) 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일수의 일부 단축 및 주말 등 특정기간을 활용한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의 일부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p>	원격수업
<p>제11조(정기 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p>	<p>제11조(정기 휴업일) ① <좌동></p>	조문 정정

개정전	개정후	비고
<p>1.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하계 방학 4. 동계 방학 5. 근로자의 날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이나 과제물을 부과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p>	<p>② 정기 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다. ③ <좌동></p>	
<신설>	<p>제31조의2(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① 제32조의2에 따라 국내·외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공동운영)
<신설>	<p>제32조의2(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국내·외 다른 대학과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공동운영)
<p>제34조(현장실습수업 및 온라인수업) ① 학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등에 의한 <u>온라인 수업</u>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학과의 <u>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u>. 단, 실험실습 교과목은 제외하며 전공과 교양은 별도로 구분하여 개설 가능한 교과목을 정한다. ③ 현장실습수업 및 <u>온라인수업</u>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34조(현장실습수업 및 원격수업) ① <좌동> ②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u>원격수업</u>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학과(전공)에 <u>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u> 실험실습 교과목은 제외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수업 및 <u>원격수업</u>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조문의 [온라인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정정</p> <p>온라인교과목 개설학점 제한 폐지(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p>
<p>제38조(출석 및 추가시험) ① 각 교과목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의 해당 교과목 학점은 낙제로 처리한다. 다만 질병, 최종학기 조기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p>	<p>제38조(출석 및 추가시험) ① <좌동> ② <좌동> ③ <u>원격수업</u>의 출석과 낙제와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p>	<p>조문의 [온라인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정정</p>

개정전	개정후	비고
<p>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최종학기 조기취업, 그 밖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p> <p>③ <u>온라인 수업</u>은 학생이 차시별 강의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1차시 출석으로 인정하며, 낙제는 본조 1항을 준용 한다.</p>	<p>정한다.</p>	
<p>제39조(학업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학습태도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p> <p>②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국가재난상황에 따른 학사운영시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p> <p>③ <u>온라인 수업</u>의 성적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등)는 직접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교강사가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복무 중 원격수업 수강하는 경우 2. <u>외국대학</u>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u>외국대학</u>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따른 원격수업 수강하는 경우 	<p>제39조(학업성적 평가) 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u>원격수업</u>의 성적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등)는 직접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교강사가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u>국내·외 대학</u>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u>국내·외 대학</u>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3. <좌동> 	<p>조문의 [온라인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정정</p> <p>교육과정공동운영의 범위를 외국대학에서 국내외대학</p>
제7장 부전공 복수전공, 학점인정	제7장 부·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학점인정	
<신설>	제44조의2(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은 본교 재학생중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학생설계전공은 본교 재학생 중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연계	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에 대한 학칙 명시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48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선정하여 전산시스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과목의 정정은 소정 기간에만 가능하며, 이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신설>	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 및 임용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8조(수강신청) ① <좌동> ② <좌동> ③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 신입생은 입학전에 재학생과 동등학 자격으로 본교에서 정한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전임교원의 임무,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 또는 산학 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으며,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되어 필요한 경우 부속시설이나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12 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직 및 임용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예비신입생의 입학전 수강을 통한 학점인정 전임교원의 임무에 관한여 세부 명시
<신설>	제53조의2(강사)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강사 임용 근거
<신설>	제53조의3(겸임교원 등) ① 총장은 겸임교원·초빙교원·석좌교수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겸임교원 등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겸임교원 등 임용 근거
제16장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제16장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극동대학교학칙

<극동규정 제1호> <시행일 2022.00.00.>

제정 : 1998.03.01.
제37차 개정 : 2021.01.11.
제38차 개정 : 2021.03.31.
제39차 개정 : 2021.04.29.
제40차 개정 : 2021.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극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우리 대학교는 학교법인 일현학원의 설립정신인 흥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29.>

제2장 편제

제1절 교육조직

제3조(교육조직) ① 우리 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을 둔다. <개정 2015.02.17.>

② 우리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두며, 학칙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 | |
|-----------------------------|--------------|
| 1. 일반대학원 | 2. 교육대학원 |
| 3. 글로벌대학원 | 4. 산업기술보안대학원 |
| 5. 보건과학대학원 <개정 2013.08.19.> | |

제4조(학위과정 등) ① 대학에 학사학위 과정을,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 과정을 둈다.<개정 2022.00.00.>

② 학부 및 대학원에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통합한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00.00.>

③ 학부 및 대학원에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한 “학·석사 연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00.00.>

④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한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00.00.>

제5조(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00.00.>

②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글로벌대학원, 산업기술보안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8.19.>

제2절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제6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의 부속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직제에 관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08.19., 2016.02.15., 2020.06.23.>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술정보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02.15., 2020.06.23.>

제6조의2(부설연구소) 우리 대학교의 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조 신설 2016.02.15.>

제3절 직제

제7조(직제) 우리 대학교 직제에 관한 사항은 직제에 관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6.23.>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개정 2003.11.25.>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3.11.25.>

제9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 2학기로 나눈다. 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년 개시 전에 개강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3.11.>

② 제1항의 학기 외에 방학 중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 학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기간도 수업일수에 포함한다 다만,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2020.3.16.>

② 삭제 <2015.02.17.>

③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일수의 일부 단축 및 주말 등 특정기간을 활용한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의 일부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3.11., 개정 2022.00.00.>

제11조(정기 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2.17., 2020.06.23.>

- | | |
|----------------|----------|
| 1.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 3. 하계 방학 | 4. 동계 방학 |
| 5. 근로자의 날 | |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0.00.>

③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02.17.>

제4장 입학

제12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2.17.>

제13조(입학자격) 우리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2. 기타 법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전항 해당자와 등등한 자격을 인정한 자. <개정 2013.08.19.>

제14조(지원절차)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 원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3. 삭제 <2015.02.17.>

제15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 입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입시요강에 따른다.

② 입학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항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 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5.05.01.>

제16조(입학허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총장이 허가하도록 한다.

제17조(정원외의 입학) 우리 대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하는 것은 해당 학년도 입시요강에 따른다.

제18조(입학절차) ①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우리 대학교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03.31>

제18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신입학 또는 편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서류와 입학금,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모집요강에서 정한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복수지원, 이중지원 및 이중등록금지조항 등 입학전형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4. 전형별 지원 자격에 미달함이 확인된 경우

5.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본조 신설 2021.03.31.>

제19조(보증인) 삭제 <2018.05.25.>

제20조(편입학) 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법령에 의거 이와 등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단,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학사편입학).

③ 정원외 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르며, 외국인 편입학은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단, 4학년 편입은 우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3년제 전문대학에서 지원학과(전공)와 동일 또는 유사 학과(전공)를 졸업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07.>

④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07.>

제21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려는 때에는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4.01.24>

③ 정원외 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르며, 외국인 편입학은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단, 4학년 편입은 우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3년제 전문대학에서 지원학과(전공)와 동일 또는 유사 학과(전공)를 졸업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신설 2020.11.19.>

.

④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19.>

제22조(모집 세칙) 그 밖의 학생 모집에 관한 세칙은 필요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장 휴학, 복학, 전과, 자퇴, 제적, 유급, 수료 및 졸업·학위

제23조(휴학) ① 당해 학기에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이 시작되지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3.01., 2014.01.24., 2015.02.17.>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질병·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 및 기타 학과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03.01., 개정 2015.02.17.>

③ 휴학자는 휴학 중 학적을 보유한다. <신설 2006.03.01.>

제24조(복학) ① 휴학자로 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학기 초 등록 기간 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1. 복학원서 1통

2. 삭제 <2014.01.24.>

② 복학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24>

제25조(전부(과)의 허가와 절차) ① 전부(과)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2015.02.17., 2016.02.15., 2017.01.16., 2018.12.24.>

② 전부(과)한 자는 전입학부(과)의 요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1.25., 2016.02.15.>

제26조(전공의 결정) ① 학부별 입학생은 소속 학부가 지정하는 소정의 기간에 희망전공을 선택한다.

단 소속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가 연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의 연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개정 2003.11.25., 2020.03.01.>

② 전공의 결정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별로 희망하는 학생 수가 수업여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제2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과의 상담 이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5.25>

제28조(제적) 다음 각 1호에 해당할 시는 제적한다.

1. 삭제 <2003.11.25.>

2. 휴학기간 경과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개정 2016.02.15.>

3. 삭제 <2016.02.15.>

4.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될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학력이 열등하거나 질병, 기타사유로 진보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9조(학사경고) ①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개정 2015.02.17., 2016.02.15., 2018.12.24.>

② 제1항의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15.02.17., 2018.12.24>

③ 삭제 <2018.12.24.>

제30조(수료인정학점) ①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각 학년의 수료 인정 시에 필요한 학점은 1학년 33학점 이상, 2학년 65학점 이상, 3학년 98학점 이상, 4학년 13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의 각 학년 수료 인정 시에 필요한 학점은 1학년 35학점 이상, 2학년 70학점 이상, 3학년 105학점 이상, 4학년 14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03.01.>

제31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졸업에 필요한 등록 학기 및 이수학점은 8학기,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각 교과영역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인증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졸업인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3.01., 2014.03.01., 2017.01.16., 2018.05.25., 2020.03.11., 2020.06.23.>

② 본 조 ①항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사정에 합격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 1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하고,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전공트랙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전공트랙을 표시한다. <신설 2006.03.01.> <개정 2020.03.01., 2020.03.11.>

③ 조기졸업과 후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3.01.>

④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총장은 수강의무 없이 이를 매 학기 단위로 최대 4학기까지 연이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8.05.25.>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02.17., 개정 2016.02.15.>

제31조의2(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① 제32조의2에 따라 국내·외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00.00>

②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00.00>

제6장 교육과정, 수업, 이수, 시험·성적

제32조(교육과정) ①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2.15.>

② 교육과정의 변경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02.15.>

③ 삭제 <2016.02.15.>

④ 학생 진로 및 취업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위하여 융합전공, 전공교육과정,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내에서 트랙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3.01.> <개정 2020.03.11.>

⑤ 융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및 트랙제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이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3.01.> <개정 2020.03.11.>

제32조의2(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국내·외 다른 대학과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00.00>

②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00.00>

제33조(수업)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시한다.

제34조(현장실습수업 및 온라인수업) ① 학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등에 의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학과(전공)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실험실습 교과목은 제외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0.03.01., 2022.00.00>

③ 현장실습수업 및 원격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1.25., 개정 2013.08.19., 2022.00.00>

제35조(이수) ① 학생은 매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1.16.>

② 계절학기에는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학점 이수)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별도 세칙에 따라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제37조(시험) 각 과목에 대하여 학기말 시험, 중간시험 및 그 외의 시험을 시행한다.

제38조(출석 및 추가시험) ① 각 교과목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의 해당 교과목 학점은 낙제로 처리한다. 다만 질병, 최종학기 조기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6.10.24.>

②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최종학기 조기취업, 그 밖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6.10.24.>

③ **원격수업의 출석과 낙제와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3.01., 개정 2022.00.00>

제39조(학업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학습태도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 <개정 2016.02.15.>

②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국가재난상황에 따른 학사운영시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07.>

③ **원격수업의 성적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등)**는 직접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교강사가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0.00>

1.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복무 중 원격수업 수강하는 경우

2.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국내·외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신설 2020.03.01. 개정 2022.00.00>

3. 천재지변,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따른 원격수업 수강하는 경우 <신설 2020.12.07.>

제40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신설 2014.03.01.>

등급	성적	평점	등급	성적	평점
A ⁺	95-100	4.5	D ⁺	65-69	1.5
A ⁰	90-94	4.0	D ⁰	60-64	1.0
B ⁺	85-89	3.5	F	0-59	0
B ⁰	80-84	3.0	P	합격(60이상)	불계
C ⁺	75-79	2.5	NP	불합격(59이하)	불계
C ⁰	70-74	2.0			

제41조(취득학점) 제40조에서 규정한 등급 중 D등급 이상을 급제로 F등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 <개정 2015.02.17.>

제42조(정정 및 취소) 이미 인정한 성적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인 것이 판명될 때는 이를 정정 혹은 취소한다.

제43조(재수강) 이미 수강한 교과목이라도 시행세칙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2016.02.15.>

제7장 부전공 복수전공, 학점인정

제44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본교 재학생 중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2.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3.01.>

제44조의2(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은 본교 재학생 중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학생설계전공은 본교 재학생 중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00.00>

제45조(학점) ① 교과(온라인 강좌 포함)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2020.03.01>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각 교과영역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2015.02.17., 2017.01.16., 2018.05.25., 2020.06.23.>

③ 본 대학교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 강좌 및 사회봉사 등에 대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정에 따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학점을 취득케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제46조(타대학 학점인정) ① 국내외 타 대학(온라인강좌 포함) 등 고등교육법에 의해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학점과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19., 2015.08.24.>

② 제1항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1.25.>

제8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47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안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8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선정하여 전산시스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7.>

② 수강 과목의 정정은 소정 기간에만 가능하며, 이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15.02.17.>

③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 신입생은 입학전에 재학생과 동등학 자격으로 본교에서 정한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0.00>

제9장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제49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대상) 본 대학교에 실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학생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제50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규정)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의 과목, 제목, 시간, 장소, 수강 자격 및 인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51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수강 허가)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에 자장이 없는 한 개강 중 수시 허가할 수 있다.

제52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비용 징수)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장 교원의 교수시간

제53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으며,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2.28., 2022.00.00>

② 전임교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되며 필요한 경우 부속시설이나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개정 2022.00.00>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0.00>

④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직 및 임용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0.00>

제53조의2(강사)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00.00>

②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00.00>

제53조의3(겸임교원 등) ① 총장은 겸임교원·초빙교원·석좌교수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00.00>

② 제1항의 겸임교원 등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00.00>

제11장 학생활동

제54조(학생회 설치)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생회는 순수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55조(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학생지도위원회 및 학생지도) ①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고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1.25.>

② 총장은 매 학년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 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57조(학생단체 조직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금지활동) 학생은 학교内外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59조(활동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1” 호의 집회에 있어서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사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59조의2(인권침해 예방 활동) ① 대학의 건전한 집단 활동을 위해 학생 집단 활동시 담당 지도교수 및 대표 학생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연대 책임을 부여하고, 학생 안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침해 사고 발생시 징계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08.29.>

제60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불가)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장학금

제62조(장학금) 장학금은 우리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 지급 기준과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0.06.23.>

제13장 포상과 징계

제63조(포상) 총장은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력과 재능이 우수하거나 또는 특히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 있다.

제64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생의 본분에 이탈한 행위를 한 자
 2. 학칙을 위반한 자
 3. 인권침해 행위(가해)자 <신설 2016.08.29.>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형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 진술·증거제출·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장 납입금

제65조(입학금)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 액의 입학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납입금)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할 때에 소정 액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

제15장 학칙개정

제67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교수회가 발의하고, 사전공고(7일 이상),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개정 2016.02.15., 2016. 10.24 ., 2020.03.11., 2020.09.15.>

제68조(규칙 제정 및 개정) 총장이 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공고(7일 이상) 및 우리 대학교 제규정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개정 2016.02.15., 2020.03.11., 2020.09.15.>

제16장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

제69조(교수회 구성) 본 대학교에 관한 주요 학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고 전임교원 이상으로 이를 구성한다. <개정 2013.08.19>

제70조(교수회 소집)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1조(교수회 심의 결의) ①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한다.

1.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2. 삭제 <2003.11.25.>

3. 삭제 <2003.11.25.>

4. 삭제 <2003.11.25.>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2조(회의록 작성) 교수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다.

제73조(교수회 내규) 교수회는 본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74조(대학평의원회) 우리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및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제정 2009.03.01, 개정 2016.02.15.>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5조(대학평의원회 구성) ① 평의원회는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평의원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23., 2021.03.31.>

1. 교원평의원 : 3명

2. 직원평의원 : 3명

3. 조교평의원 : 1명

4. 학생평의원 : 1명

5. 기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3명

② 삭제 <2020.06.23.>

③ 삭제 <2020.06.23.>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제76조(대학평의원회 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평의원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6.23.>

제76조의2(교무위원회) ① 우리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기타 교무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9.15.>

제17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

제77조(위탁생)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이 추천하는 기업체 및 사회공공단체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시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8조(학·군 제휴)** 학·군 제휴협약에 의하여 군 간부의 학위과정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학사관리 및 학점교류 등 학·군간 학문교류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9조(외국인학생)** 외국인으로서 제4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80조(외국인학생의 수료증)** 외국인 특별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교육부령에 의거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81조(외국인학생의 졸업증서)** 학칙 제13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본 대학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31조에 규정한 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6.02.15.>
- 제82조(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의 학칙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특별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 제83조(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장 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 제84조(자격)** 시간제등록생은 학칙 제13조의 입학자격에 준한다. <개정 2003.11.25.>
- 제85조(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시간제등록생은 당해 입학정원의 10%를 그 모집정원으로 하며, 입시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한다. <개정 2003.11.25.>
- 제86조(수강신청)** ①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간제등록생과 관련,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87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 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1.25.>

제19장 산학협력 <신설 2003.11.25.>

- 제88조(산학협력계약)** 총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9조(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는 산업교육진흥및산업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극동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 및 산학협력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0조(협력연구소)** 본 대학교의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1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3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당 인정 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32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장 자체평가

- 제92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신설 2012.03.01.>

- 제93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리 대학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사항<신설 2021.03.31.>
- ② 삭제 <2016.08.29.>
- 제93조2(구성)** ① 위원회는 우리대학교에서 등록금 심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23.>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3.31.>

위원구분	위원수	비고
교직원	4	4.5명 초과불가(정수의 10분의 5 미만)
학생대표	3	2.7명 이상 필히 배정(정수의 10분의 3 이상)
관련전문가	2	4.5명 초과불가(정수의 10분의 5 미만)
계	9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명하며 회의 소집 및 진행을 담당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
 ⑤ 관련 전문가는 우리 대학교 및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본조 신설 2016.08.29.><개정 2021.03.31.>

제93조3(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3.>
2.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관련전문가 및 동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자격상실, 사임,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08.29.>

제93조4(회의)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1.03.01.>

- ② 위원회는 교직원 3인 이상 및 학생대표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6.08.29.>

제22장 계약학과 <신설 2012.03.01.>

제94조(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 ①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경상학부 경영학 전공, 전산정보학부 멀티미디어학 전공, 조형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행이전의 학과로 학위를 수여한다.
3. (교과과정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교과과정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98학년도 입학생은 2002년 2월 이내에 졸업하는 학생까지는 구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학년도에 입학한 경상학부 학생은 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전산정보학부, 조형예술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통신학부, 예술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행 이전의 학부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2조, 제2조의 2, 제31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부(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예술학부, 방송연예학과의 재적생을 디자인학부, 연극연기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행 이전의 학부(과)의 학위로 수여한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경영학부(호텔레저경영학전공), 예술학부(시각디자인전공, 광고디자인전공), 정보통신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게임소프트웨어공학전공), 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과를 호텔관광학부(호텔외식경영학전공, 관광레저경영학전공), 디자인학부(시각정보디자인학전공,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전공), 정보통신학부(인터넷정보통신공학전공, 응용컴퓨터공학전공, 게임디지털컨텐츠공학전공), 전자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응용컴퓨터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행 이전의 학부(과) 및 전공의 학위로 수여한다.

3.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방송연기학전공(2002년 입학생), 방송연출학전공(2002년 입학생), 방송홍보학전공(2002년 입학생)을 연극연기학과, 방송영상학부 영상제작학전공, 방송영상학부 광고홍보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행 이전 전공의 학위로 수여한다.

4. 우리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학부(과)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예술학부 포장디자인학전공은 변경전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2. 전자공학부(2002년 입학생), 전자공학과(2003년 입학생)은 해당 입학년도 입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3. 전자공학부(2002년 입학생) 및 전자공학과(2003년 입학생) 재적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학부의 재적생으로 보며, 정보통신학부에 소속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우리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우리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우리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서비스학 재적생을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행 이전의 학부(과)의 학위로 수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치료특수교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초등특수교육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우리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행 이전의 학부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

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행 이전의 학부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행 이전의 학부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행 이전의 학부(과)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행 이전의 학부(과)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 및 전공 또는 유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졸업시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행 이전의 학부(과)로 학위를 수여하며, 유사학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1. 제30조의 수료학점과 제31조 1항 및 제45조 2항의 졸업이수학점 개정 조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편입생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편입생은 2015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17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제30조의 수료학점과 제31조 1항 및 제45조 2항의 졸업이수학점은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다.

나. 2018년 2월부터 졸업하는 학생은 제30조의 수료학점과 제31조 1항, 및 제45조 2항의 졸업이수학점은 본 개정 조항을 적용한다.

③ (학업성적 분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40조는 전체 재적학생 및 졸업생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종학기 조기취업생에 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 최종학기 조기취업생에 대하여는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별표 1>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학년도 모집단위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폐지 학과명: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항공운항서비스학과, 경찰행정학과, 중국통상법학과, 광고컨텐츠디자인학과

2. 폐지 학과의 존속은 2019학년도까지 하며, 편제완성년도인 201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과 폐지 전의 학과와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체 인정받거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학과(전공) 통합 해당 학과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글로벌경영학과, 정보경영학과, 도시·환경계획학과는 글로벌경영학과로 통합한다.

2.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전공, 관광레저경영전공은 호텔·관광경영학과로 통합한다.

3. 태양광공학과, 스마트모바일학과는 스마트태양광융합학과로 통합한다.

4.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과로 통합한다.

5. 미디어콘텐츠학과 만화·애니메이션전공, 드라마특수영상전공은 만화·애니메이션학과로 통합한다.

6. 연극연기학과 연기전공, 연출·스텝전공, 뮤지컬전공은 연극연기학과로 통합한다.

7. 이 학칙에 따라 통합 전 학과는 2019학년도까지 존속하며, 편제완성년도인 201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③ 학과 명칭 변경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언로홍보학과는 미디어홍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유비쿼터스IT학과는 항공IT융합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3. 사이버안보학과는 산업보안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4. 영상제작학과는 미디어영상제작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5. 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은 그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④ 모집단위 변동(통합, 명칭변경, 폐지)된 학과의 학생이 원활 경우 변동 전 소속으로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모집단위 변동에 따라 교무연구처장은 변동 전의 전공 취득학점을 변동 후 학과의 유사전공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단과대학 체제 변환에 따른 경과조치) 각 계열별 학과에서 단과대학 학과 체제로 변환됨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은 각 단과대학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별표 1>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학년도 모집단위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명칭 변경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스마트태양광융합학과는 에너지IT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식품발효학과는 바이오식품공학과(식품영양학전공)로 명칭을 변경한다.

3. 미디어홍보학과는 언론홍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② 모집단위 변동(명칭변경)된 학과의 학생이 원활 경우 변동 전 소속으로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별표 1>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학년도 모집단위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모집중단 학과명: 글로벌경영학과, 금융자산관리학과, 언론홍보학과

2. 모집중단 학과의 존속은 2021학년도까지 하며, 편제완성년도인 202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과 폐지 전의 학과와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체 인정받거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학과 명칭 변경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바이오식품공학과(식품영양학전공)은 식품영양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은 그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③ 모집단위 변동(명칭변경, 모집중단)된 학과의 학생이 원할 경우 변동 전 소속으로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별표 1>, 제31조 제2항의 <별표 2>는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0학년도 모집단위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산업보안학과는 사이버보안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은 그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3. 모집단위 변동(명칭변경)된 학과의 학생이 원할 경우 변동 전 소속으로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별표 1>, 제31조 제2항의 <별표 2>는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1학년도 모집단위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호텔·관광경영학과는 호텔경영전공 및 관광경영전공을 둔다.

2. 일본문화관광컨텐츠학과는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3. 사이버보안학과는 해킹보안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4. 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은 그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5. 모집단위 변동(명칭변경)된 학과의 학생이 원할 경우 변동 전 소속으로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의 <별표 1>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 체제 변환에 따른 경과조치)

1. 단과대학 변경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은 각 단과대학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2. 모집중지학과(글로벌경영학과, 금융자산관리학과, 언론홍보학과,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통상법학과, 경찰행정학과)는 인재개발대학으로 소속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는 2022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평의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시행당시 재임 중인 대학평의원회 위원은 제7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 학칙에 따른다.

제3조(2022학년도 모집단위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 ① 학과 모집중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모집중지 학과(전공)명: 호텔관광경영학과(호텔경영전공), 호텔관광경영학과(관광경영전공),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무인기산업학과, 에너지IT공학과, 반도체장비공학과, 안경광학과, 식품영양학과
 - 모집중지 학과(전공)의 존속은 2024학년도까지로 하며, 편제 완성년도인 202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과 모집중지 전의 학칙과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체 인정받거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 ② 학과 명칭 변경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항공IT융합학과는 AI컴퓨터공학과로 명칭이 변경 된다.
 -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학과의 재적생은 그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모집단위 변동(명칭변경, 모집중지)된 학과의 학생이 원할 경우 변동 전 소속으로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모집단위 변동에 따라 교학처장은 변동 전의 전공 취득학점을 변동 후 학과의 유사전공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항공모빌리티학과는 첨단분야 학과로 2022학년도부터 편입학 여석에서 60명을 제외하고 모집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는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학정원(2022년도) <개정 2020.03.31., 2021.04.29.>

대학	학과	전공	입학정원	비고
호텔관광대학	글로벌호텔경영학과		27	인문사회계열
	호텔외식조리학과		25	인문사회계열
인재개발대학	사회복지학과		25	인문사회계열
	특수교육학과	중등특수교육전공	14	인문사회계열
		초등특수교육전공	14	인문사회계열
	군사학과		45	인문사회계열
항공대학	항공운항서비스학과		60	인문사회계열
	항공안전관리학과		30	자연과학계열
	항공운항학과		40	공학계열
	항공정비학과	항공기계전공	30	공학계열
		항공전자전공	30	
	헬리콥터UAM조종학과		30	공학계열
	항공모빌리티학과		30	공학계열
과학기술대학	AI컴퓨터공학과		20	공학계열
	친환경에너지공학과		30	공학계열
	해킹보안학과		30	공학계열
	글로벌반도체공학과		27	공학계열
의료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71	자연과학계열
	방사선학과		30	자연과학계열
	임상병리학과		35	자연과학계열
	작업치료학과		45	자연과학계열
	사회체육학과		40	예체능계열
미디어예술대학	디자인학과		38	예체능계열
	만화·애니메이션학과		40	예체능계열
	미디어영상제작학과		25	예체능계열
	연극연기학과		40	예체능계열
합계			871	

<별표 1> 입학정원 (2021년도)

대학	학과	전공	입학정원	비고
호텔관광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전공	20	인문사회계열
		관광경영전공	20	
	호텔외식조리학과		35	인문사회계열
인재개발대학	사회복지학과		30	인문사회계열
	중등특수교육학과		14	인문사회계열
	초등특수교육학과		14	인문사회계열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25	인문사회계열
	군사학과		35	인문사회계열
항공대학	항공운항서비스학과		40	인문사회계열
	항공운항학과		30	공학계열
	항공정비학과		48	공학계열
	무인기산업학과		30	공학계열
의료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65	자연과학계열
	안경광학과		25	자연과학계열
	방사선학과		30	자연과학계열
	임상병리학과		35	자연과학계열
	작업치료학과		50	자연과학계열
	식품영양학과		25	자연과학계열
	사회체육학과		35	예체능계열
과학기술대학	항공IT융합학과		25	공학계열
	에너지IT공학과		25	공학계열
	해킹보안학과		25	공학계열
	반도체장비공학과		25	공학계열
미디어예술대학	디자인학과		30	예체능계열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5	예체능계열
	미디어영상제작학과		30	예체능계열
	연극연기학과		40	예체능계열
합계			841	

<별표 1> 입학정원 (2020년도)

대학	학과	입학정원	비고
사회과학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	40	인문사회계열
	호텔외식조리학과	40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과	35	인문사회계열
	중등특수교육학과	14	인문사회계열
	초등특수교육학과	14	인문사회계열
	일본문화관광컨텐츠학과	30	인문사회계열
	군사학과	35	인문사회계열
항공대학	항공운항서비스학과	50	인문사회계열
	항공운항학과	30	공학계열
	항공정비학과	40	공학계열
	무인기산업학과	40	공학계열
의료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65	자연과학계열
	안경광학과	30	자연과학계열
	방사선학과	30	자연과학계열
	임상병리학과	35	자연과학계열
	작업치료학과	50	자연과학계열
	식품영양학과	30	자연과학계열
과학기술대학	항공IT융합학과	35	공학계열
	에너지IT공학과	35	공학계열
	사이버보안학과	35	공학계열
	반도체장비공학과	30	공학계열
미디어예술대학	디자인학과	35	예체능계열
	만화·애니메이션학과	40	예체능계열
	미디어영상제작학과	30	예체능계열
	연극연기학과	45	예체능계열
	사회체육학과	42	예체능계열
합계		935	

<별표 1> 입학정원 (2019년도)

대학	학과	입학정원	비고
사회과학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	40	인문사회계열
	호텔외식조리학과	40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과	35	인문사회계열
	중등특수교육학과	14	인문사회계열
	초등특수교육학과	14	인문사회계열
	일본문화관광컨텐츠학과	30	인문사회계열
	군사학과	35	인문사회계열
항공대학	항공운항서비스학과	50	인문사회계열
	항공운항학과	30	공학계열
	항공정비학과	40	공학계열
	무인기산업학과	40	공학계열
의료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65	자연과학계열
	안경광학과	30	자연과학계열
	방사선학과	30	자연과학계열
	임상병리학과	35	자연과학계열
	작업치료학과	50	자연과학계열
	식품영양학과	30	자연과학계열
과학기술대학	항공IT융합학과	35	공학계열
	에너지IT공학과	35	공학계열
	산업보안학과	35	공학계열
	반도체장비공학과	30	공학계열
미디어예술대학	디자인학과	35	예체능계열
	만화·애니메이션학과	40	예체능계열
	미디어영상제작학과	30	예체능계열
	연극연기학과	45	예체능계열
	사회체육학과	42	예체능계열
합계		935	

<별표 1> 입학정원 (2018년도)

대학	학과	입학정원	비고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영학과	35	인문사회계열
	금융자산관리학과	35	인문사회계열
	호텔·관광경영학과	40	인문사회계열
	호텔외식조리학과	35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과	35	인문사회계열
	중등특수교육학과	14	인문사회계열
	초등특수교육학과	14	인문사회계열
	언론홍보학과	32	인문사회계열
항공대학	항공운항서비스학과	50	인문사회계열
	항공운항학과	25	공학계열
	항공정비학과	35	공학계열
	무인기산업학과	30	공학계열
의료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65	자연과학계열
	안경광학과	30	자연과학계열
	방사선학과	30	자연과학계열
	임상병리학과	35	자연과학계열
	작업치료학과	50	자연과학계열
과학기술대학	항공IT융합학과	35	공학계열
	에너지IT공학과	35	공학계열
	산업보안학과	35	공학계열
	반도체장비공학과	30	공학계열
	바이오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전공)	30	자연과학계열
미디어예술대학	디자인학과	35	예체능계열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5	예체능계열
	미디어영상제작학과	30	예체능계열
	연극연기학과	45	예체능계열
	사회체육학과	35	예체능계열
합계		935	

<별표 2> 학사학위 수여표 <개정 2021.01.11., 2021.03.31., 2021.04.29.>

대학	학과	전공명	학위명	비고
호텔관광대학	글로벌호텔경영학과		호텔경영학사	
	호텔외식조리학과		호텔외식조리학사	
인재개발대학	특수교육학과	중등특수교육전공	교육학사	
		초등특수교육전공	교육학사	
	군사학과		군사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항공대학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경영학사	
	항공안전관리학과		이학사	
	항공운항학과		공학사	
	항공정비학과	항공기계전공	공학사	
		항공전자전공		
	헬리콥터UAM조종학과		공학사	
	항공모빌리티학과		공학사	
과학기술대학	AI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친환경에너지공학과		공학사	
	해킹보안학과		공학사	
	글로벌반도체공학과		공학사	
의료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작업치료학과	-	보건학사	
	사회체육학과	-	체육학사	
미디어예술대학	디자인학과	-	미술학사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미술학사	
	미디어영상제작학과	-	예술학사	
	연극연기학과		예술학사	

<서식1> 학위증서

학제 0000-00 호

학위증서

성명 : 0 0 0
0000년 00월 00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부/과 :

전공 : 전공(학사)

부전공 : 전공

복수전공 : 전공(학사)

0000년 00월 00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 0 0 0

학위번호 : 극동대 0000(학)00